

□ 진정 제36호 (김용갑 사건)

의문사한 자	◦ 김용갑(1966년 2월 28일생, 동우전문대 총학생회장)
피진정기관	◦ 대한민국/속초경찰서/동우전문대 사학재단
사망일시	◦ 1990년 3월 28일 02:00경
사건개요	◦ 1990년 3월 27일 15:00경부터 같은날 23:25경까지 동료 학우들과 술자리를 하고 헤어진 후 집에 귀가하지 않은 채 속초시 도로공사 연수원 앞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단순 교통사고로 수사 종결(1990년 3월 30일 속초경찰서에 문종석이라는 인물이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자수함).
진정취지	◦ 김용갑이 1989년 11월 총학생회장선거에서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후 여러 차례의 폭행, 감금 등을 받아왔으며, 1990년 3월 27일에도 총학생회장실에 난입한 폭력배(학생과 직원의 비호를 받는 학생)들에 의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며, ◦ 자수자 문종석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김용갑의 죽음의 배후에 학교재단측의 사주를 받은 폭력배에 의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이 속초시 폭력배들에 의해 공공연하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사로 처리하였기에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37호 (박종근 사건)

의문사한 자	◦ 박종근 (1963년 12월 6일생, 군인)
피진정기관	◦ 국방부/육군본부/2군/50사단/122연대/1대대/경주 중앙동대
사망일시	◦ 1988년 8월 1일
사건개요	◦ 박종근은 한의대를 졸업한 뒤 육군 50사단 경주 중앙동대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1988년 8월 1일 아침경 중대본부에 출근한 뒤 창고에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수사결과	◦ 어려운 가정환경에 대한 비판, 그리고 헌병파견대장의 보약요구사실을 주위에 발설하여 그 말이 퍼져나가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분신 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중대장과 헌병대 파견대장이 보약을 지어달라고 요구하여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박종근 사망과 이들이 관련되었을 것이고, ◦ 한의대를 졸업하여 방위복무를 마치면 개원할 텐데 새삼스레 가정의 불우함 때문에 자살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고, ◦ 등 부분은 타지 않고 깨끗함. 따라서 분신자살이 아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에서 외부의 힘에 의해 불이 붙여진 것으로 의문이 있기에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38호 (우인수 사건)

의문사한 자	◦ 우인수(1966년 5월 22일생, 군인 사망당시 일병)
피진정기관	◦ 국방부/육군본부/3군/제1사단/포병연대/58대대/1포대
사망일시	◦ 1988년 6월 24일 07:55경
사건 개요	◦ 우인수는 1988년 6월 20일 부터 같은해 25일 까지 실시된 소속대 유격훈련에 참가하여, 같은달 20일 17:00경부터 유격장내 비포장도로 약 4킬로미터 구간을 비무장구보 하던 중, 같은날 17:25경 구보구간 3.85킬로미터 지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단의무대, 벽제(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으나 같은달 24일 07:55경 사망함.
수사 결과	◦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 취지	◦ 부검에 입회한 당시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 대표들에 따르면 우인수의 머리 뒷부분이 부었고 가슴에 군화발자국이 있는 등 시신에 구타흔적이 있었다는 점, 우인수는 입대 전 1개월 간의 자전거 전국여행을 할 정도로 건강하였고 유족들이 중앙기상대에 문의한 결과 사고당일 사고지역 날씨는 구름이 끼고 비가 왔다고 하므로 열사병 발병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으로 보아 구타로 인한 사망의혹이 제기되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결 정	◦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진정을 기각함.

□ 진정 제39호 (이윤성 사건)

의문사한 자	◦ 이윤성(1962년 6월 23일생 군인, 사망당시 일병)
피진정기관	◦ 박준병(전 국군보안사령관) ◦ 서의남(전 국군보안사령부 대공처 심사과장) ◦ 국군보안사령부 및 육군 제5사단 205보안부대
사망일시	◦ 1983년 5월 4일
사건 개요	◦ 소속대에서 불온뼈라(안전보장증의 1매), 철학개론을 소지한 혐의로 제205보안부대에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정구장 심판대에 군화끈 및 요대로 목을 맨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 결과	◦ 205보안부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1983년 5월 4일 03:00부터 같은날 04:00까지 사이에 자신의 비행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고심하다가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경계병 일병 김재철의 눈을 피해 침실을 이탈, 정구장 심판대 (높이 3.25M)에 목을 매어 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 취지	◦ 성균관 대학교에서 학생운동에 적극 가담하여 활동하던 중 가두시위 과정에서 연행되어 강제징집되었고, ◦ 월북기도 혐의는 조작된 것이며 군 관련 수사기록상 많은 부분에서 관련자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조작된 의혹이 있으며, ◦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 따른 고문, 협박, 폭행 등 가혹 행위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의혹이 있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40호 (박필호 사건)

의문사한 자	◦ 박필호(1966년 11월 15일생, 군인 사망당시 이병)
피 진정기관	◦ 국방부/육군 제26사단
사망일시	◦ 1987년 3월 19일 06:00경
사건개요	◦ 아침기상 5분전에 화장실에 간다고 불침번에게 보고 하고 내무반을 나간 후, 화장실에서 목을 맨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입대 전 부산 의과대학을 입학하였음에도 군의관으로 입대하지 않고 병사로 입대한 이유를 묻는 주위의 놀림과, 대학교 진학 문제(서울대 공과대학 2회 낙방)로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사체상태가 구타당한 흔적이 있고 색흔이 수평으로 나타나 있으며, 유서도 없고, 가정문제도 전혀 없어 자살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구타에 의한 타살을 자살로 위장한 의혹이 제기되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41호 (정연관 사건)

의문사한 자	◦ 정연관(1966년 12월 26일생, 군인 사망당시 상병)
피진정기관	◦ 국방부/육군 제2군지사
사망일시	◦ 1987년 12월 4일 22:20경
사건개요	◦ 소속대인 육군 제2군지사 11보급대대 내무반에서 일석점호 후 취침시간에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소속대 선임병인 병장 백재윤이 후임병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 하급자 9명을 침상위에 일렬횡대로 세워놓고 주먹으로 가슴을 2대씩 구타하는 도중에 정연관이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 ◦ 가해자 백재윤 형사처벌(실형 복역함).
진정취지	◦ 군 부대에서 당시 1987년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와 관련하여 특정후보에 투표하라는 내용의 부정선거 강요가 있었고, ◦ 사체의 등 부분에 광범위한 피명 자국이 있었고, ◦ 사건 발생 후 보안부대 요원이 정연관의 형을 협박하여 미리 작성해온 사과문에 지장을 찍도록 하는 등 ◦ 사망원인에 의혹이 있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42호 (남현진 사건)

의문사한 자	◦ 남현진(1970년 2월 22일생, 군인 사망당시 이병)
피진정기관	◦ 대한민국/국방부/육군본부/육군 군수사/1사단
사망일시	◦ 1991년 2월 3일
사건개요	◦ 1991년 1월 17일 소속 사단을 배치받은 후 같은해 2월 3일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선유3리 소재 소속대 쓰레기장 부근 철조망 울타리 밖의 인근 야산에서 소나무 가지에 목을 맨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주특기가 정보에서 소총수로 바뀌고, 완전군장 훈련과 전방 철책근무에 따른 불안감과 복무염증 때문에 1991년 2월 3일 12:00경 소속대 쓰레기장 부근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 북방 약 100M 떨어진 야산 소나무 가지에 중대 막사 뒤 빨래 건조대에 있던 나이론 끈을 이용, 목매어 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한국 외국어대학교 재학 중 학생운동에 가담하여 활동한 경력이 있었던 남현진에게 정보 주특기를 부여한 이유가 의문이며, 훈련소 퇴소시 활기찬 모습이었으나 사단에서 연대로 배치 받을 10일 동안 불안해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하므로 모종의 정치공작(프락치강요)이 있었으리라 판단되며, 전방 적용훈련에서 60킬로 행군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사망 당일 감기약을 복용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소속대에서 하사 이창호와의 대화 도중,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그 때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미국이다"라고 대답했다는데 갓 들어온 신병에게 정치성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은 남현진이 학생운동을 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며, 남현진의 직선적인 대답은 모종의 정치적 탄압이 있었음을 암시하므로 사망원인에 의혹이 있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43호 (박상구 사건)

의문사한 자	◦ 박상구(1967년 7월 6일생, 군인 사망당시 하사)
피진정기관	◦ 국방부/육군 제7탄약창
사망일시	◦ 1987년 5월 11일 01:45경
사건개요	◦ 박상구는 1985년 12월 13일 군에 지원 입대하여 하사관 임용을 받은 후 1986년 5월 31일 소속대에 전입한 이래 탄약취급 반장직에 근무하다가 1987년 4월 15일 부터 양묘장 관리 하사직에 근무하던 중 1987년 5월 11일 소속대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박상구가 1987년 5월 10일 외박 나가서 20분 늦게 부대에 복귀했다고 부대 당직사관으로부터 꾸중을 듣자, 평소에 가정 생계곤란 및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열등감을 갖고 삶을 비관하여 당일 꾸중을 계기로 급한 성격에 농기구 함에 보관 중이던 농약을 마시고 약물 중독에 의한 호흡 부전 심장마비로 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박상구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저학력이었지만 공장을 다니며 기능사 자격증을 따는 등 열심히 살았고 직업 군인의 길을 가기 위해 스스로 군을 선택하는 등 자살동기가 불분명하고, ◦ 변사체 어깨에 7-8cm의 칼자국과 목과 어깨 부분에 구타로 인한 멍 자국 및 목이 졸린 흔적 등이 있는 등 사망원인에 의문이 있음에도 당시 부대 관계자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자살로 처리하는 등 사망원인에 의문이 있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44호 (노철승 사건)

의문사한 자	◦ 노철승 (1965년 3월 5일생, 군인)
피진정기관	◦ 국방부/육군본부/기무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33단경비단/33단헌병대
사망일시	◦ 1987년 3월 1일
사건개요	◦ 노철승은 소속대에서 경비근무교대를 마치고, 근무자 3인과 함께 맨 뒤에서 순찰로를 따라 소대막사로 복귀하던 중 K2소총 탄환 2발에 의한 총상을 입은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가족문제와 대학을 못간 열등감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총기의 개머리판을 양발사이에 끼우고, 총구를 이마 정중앙에 밀착, 오른손가락으로 실탄 2발 발사하여 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사입구(6x3.5cm)가 사출구(0.5cm)보다 훨씬 작아 뒤바뀐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 군수사발표상의 추정사격자세가 매우 부자연스럽고, 머리에 총에 맞은 사람이 뒤이어 한 발을 더 쏘았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으며, ◦ 부대원들에게 맞아 무릎을 다쳐 후송갔다가 복귀한 지 약 2주만에 사망한 것이고, ◦ 학생운동을 했던 친형이 현역복무 중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형과 편지 왕래한 것이 적발되어 관계기관에서 조사받던 중 사망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45호 (이승삼 사건)

의문사한 자	◦ 이승삼(1968년 1월 5일생, 군인)
피진정기관	◦ 국방부/육군 제36사단
사망일시	◦ 1987년 3월 3일 16:50경
사건개요	◦ 1987년 3월 3일 16:50경 육군 제36사단 공병대대 본부 중대 중대장실 내에서 탄환이 목 부분으로 사입되어 두정부로 사출한 관통상을 입은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지병인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아침 구보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 올라 대열에서 낙오하는 등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복무염증을 느낀 나머지 신병을 비판 하다가 총기를 이용하여 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중대장실 옆은 행정실과 내무반인데도 누구도 총성을 듣지 못한 점이 의심되고, 고참병들의 구타로 안경이 파손되고 안경알이 눈 주위에 박혔으며 이빨이 4개나 부러진 점 등에 비추어 고참병들의 구타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군부대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 은폐한 의혹이 있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46호 (박성은 사건)

의문사한 자	◦ 박성은(1969년 12월 10일생, 군인 사망당시 이병, 방위병)
피진정기관	◦ 국방부/육군본부/육군 제31사단
사망일시	◦ 1990년 5월 23일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사이
사건개요	◦ 방위병으로 무단결근을 하여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고 소속부대 징계위원회에서 영창7일 결정에 따라 영창을 다녀 온 후, 귀가하여 친구를 만나고 난 뒤 자택근처 유치원 놀이터에서 음독한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태권도 미숙으로 무단결근을 하고 영창에 다녀온 사실에 대한 창피함에 비관하여 음독 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부대에서 만연하는 구타행위에 대한 비민주적행위를 고발하는 문건을 작성, 부대복귀 시 소지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부대에서 일주일간 박성은을 귀가 시키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집에 알렸으며, 자살할 이유가 없으며 음독하였다는 약병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사체와 사체 주변에서 음독한 흔적을 볼 수 없는 등 사망원인에 의혹이 있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47호 (임기윤 사건)

의문사한 자	◦ 임기윤(1922년 12월 27일생 부산신학교 운영위원장·부산지방 감리사)
피진정기관	◦ 대한민국 정부/국방부/국군기무사령부
사망일시	◦ 1980년 7월 26일 22:43경
사건개요	◦ 1980년 7월 18일 오후경 국군보안사령부 부산분실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고 그 다음날 출두하여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 같은달 21일 12:30경 혼수상태로 부산지구 국군통합병원에 후송되어 같은달 26일 부산대병원에서 사망함.
수사결과	◦ 뇌교부 뇌일혈로 병사(病死)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변사체 뒷머리 왼쪽이 3cm가량 찢어져 있는 상처가 있고, 임기윤이 특정한 혐의도 없이 조사를 받던 중 무리한 강압수사나 구타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사망원인에 의문이 있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결 정	◦ 임기윤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고, 다만 망 임기윤이 1998. 4. 49. 광주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고 그 유족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망 임기윤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함.

□ 진정 제48호 (정인택 사건)

의문사한 자	◦ 정인택(1968년 1월 13일생, 연세대 전자공학과1년)
피진정기관	◦ 대한민국/군보안대/안기부/치안본부/관악경찰서
사망일시	◦ 1996년 6월 6일
사건개요	◦ 학교 도서관에서 기말고사를 준비하다 귀가 중, 친구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아파트 앞에서 두부를 심하게 다쳐 쓰러진 채 발견되어, 강동성모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뇌수술 등 9년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수사결과	◦ 수사자료 없음.
진정취지	◦ 아파트내 사건임에도 목격자 없고, 수사진행 상황에 대하여 가족들에게 단 한번도 설명이 없었고, 담당 형사가 '이 사건은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절대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덮어주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등 사망과정에 의혹이 있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결 정	◦ 민주화운동 관련성은 인정되나,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진정을 기각함.

□ 진정 제49호 (한영현 사건)

의문사한 자	◦ 한영현(1962년 3월 1일생,한양대 정밀기계과 3년 재학)
피진정기관	◦ 대한민국/국방부/기무사령부/육군본부/7사단/성동경찰서
사망일시	◦ 1983년 7월 2일 09:45경
사건개요	◦ 한영현은 1983년 6월 27일부터 같은해 7월 2일까지 실시된 부대거점 방어훈련중, 같은해 7월 2일 09:42경 숙영지에서 10M 떨어진 참호에서 M16 소총 탄환에 의한 총상을 입은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한영현은 평소 가정형편(부친이 모친을 살해하여 교도소 복역중이며, 형은 2세대 소아마비 및 폐결핵으로 불구인상태이며, 재산 일백만원 미만으로 가족생계 곤란)등으로 삶을 비판하다 소속대 훈련중 분대장 하사 임길순의 탄입대에서 실탄 1발을 절취하여 은닉타 참호에 들어가 자신의 소총으로 격발하여 현장에서 총기 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한양대 공대 정밀기계학과 3년 재학중 1983년 4월 2일 교내 탈 연합회 및 부친 야학 활동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7사단 신병교육대로 강제징집되어 군입대하였고, 자살할 이유가 없으며, 군생활중 보안부대의 프락치 강요와 심한 취조 및 고문으로 휴가중 무척 불안한 상태였으며, 변사체에 명자국이 있었고, 군당국에서 사체부검을 끝까지 거부하는 등 구타 및 타살을 총기자살로 은폐·조작한 의혹이 제기되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결 정	◦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진정을 기각함.

□ 진정 제50호 (김영환 사건)

의문사한 자	◦ 김영환(1965년 2월 15일생, 한겨레 사회연구소 연구원)
피진정기관	◦ 대한민국/국방부/기무사령부/중앙경찰서
사망일시	◦ 1991년 4월 27일 09:00경
사건개요	◦ 한겨레 사회연구소 연구원으로서, 1991년 보안사 민간인 사찰에 대한 양심선언을 한 윤석양 이병의 후원회 일을 하던 중, 1991년 4월 25일 16:00경 퇴근 후 행발불명되었다가 같은달 27일 아침경 서울 장위동 소재 자취방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대동맥 파열로 인한 흉강내 출혈사로 타살의 혐의점 발견치 못하여 수사종결.
진정취지	◦ 김영환은 고려대 불문학과 84학번으로 졸업 후 한겨레 사회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던 중, 1991년 보안사 민간인 사찰에 대한 양심선언을 한 윤석양 이병의 후원회원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하여 보안사의 주목을 받다 추적을 받던 중 사망 이틀 전부터 행적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사망당일 숨진 채 자취방에서 발견된 것으로, 사고당일 정황 등에 비추어 단순한 병사가 아닌 보안사에 의한 타살은 폐 의혹이 제기되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결 정	◦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진정을 기각함.

□ 진정 제51호 (정도준 사건)

의문사한 자	◦ 정도준(1971년 1월 1일생, 군인 사망당시 이병)
피진정기관	◦ 육군본부/육군 제25사단 70연대
사망일시	◦ 1992년 4월 24일 00:30경
사건개요	◦ 정도준은 육군 제25사단 70연대 4대대 본부중대 PX관리병으로 근무하던 중, 대대ATT훈련기간에 주둔지에서 잔류하였다가, 소속대 세면장 천정부분의 수도 파이프에 태권도복 끈을 묶어 걸고 열십자로 두 번 자신의 목을 조른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수사자료 미확보
진정취지	◦ 군 부대에서 부재자투표에 필요하다면서 두 번에 걸쳐 주민등록등본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변사체의 턱에 동전 크기보다 약간 작은 피명 자국이 3개 있었으며, 부검 과정에서 부검의가 피명 자국부터 먼저 해부하는 등의 점에 비추어, 1992년 3월 선거에서 부재자투표를 하면서 야당후보를 지지했다고 하여 살해당하고 자살로 위장되었을 의혹이 있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52호 (손윤규 사건)

의문사한 자	◦ 손윤규(1923년 10월 6일생, 재소자)
피진정기관	◦ 대한민국/대구교도소장, 보안과장, 교무과장
사망일시	◦ 1976년 4월 1일
사건개요	◦ 손윤규는 대구교도소 복역 중, 1976년 3월경 동료들과 단식하다가 6일만에 병사로 옮겨져 같은해 4월 1일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전신쇠약과 빈혈로 사망
진정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향 장기수로 유신 반대 투쟁 등을 하였고,</li> <li>◦ 1976년 3월에 교도관 등에 의해 집단 구타당한 후 동료들의 단식 투쟁에 동참하였다가 강제 급식을 실시하던 중 사망한 것이고,</li> <li>◦ 인간의 생각은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 권력이 요구하는 사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장기간 감옥 안에 감금하고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행하는 것은 잘못이며,</li> <li>◦ 갖가지 인권 유린에 항거하여 단식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중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안에 고무호스를 삽입하고 소금이 엉켜 있는 진한 염수를 목구멍으로 주입시키는 과정에서 살해되었다는 의문이 있으며,</li> <li>◦ 이런 행위들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처사로서 인간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함.</li> </ul>

□ 진정 제53호 (한희철 사건)

의문사한 자	◦ 한희철( 1961년 2월 11일생, 서울대 공대 기계설계학과 4년 휴학)
피진정기관	◦ 대한민국/국방부/기무사령부/육군 제5사단
사망일시	◦ 1983년 12월 11일 04:25경
사건개요	◦ 서울대 공대 기계설계학과 4년 재학중 1982년 12월 1일 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5사단 본부대에 배속된 후 1983년 12월 11일 04:50경 초소 근무중 실탄 3발에 의한 총상을 입은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평소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민주정치의 미흡성을 비판하고, 빈곤한 사회 생활에 대한 경제, 정의를 주장하다가 유서를 써 놓고 사단사령부 비문합동 보관소 경계보초 근무중 본인의 총기로 자동격발하여 현장에서 총기 자살한 것으로 수사 종결.
진정취지	◦ 사망자는 자살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운동권활동과 관련하여 5일간 보안부대 조사를 받은 다음날에 변사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안부대의 조사과정에서 가혹한 취조와 전기 고문을 가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54호 (변형만 사건)

의문사한 자	◦ 변형만 (생년월일 미상, 재소자)
피진정기관	◦ 청주보호감호소 (현 청주여자교도소)
사망일시	◦ 1980년 7월 11일
사건개요	◦ 변형만은 청주감호소 복역 중 1980년 7월 7일 서적제한 조치에 반대하는 단식 농성하다가 같은 달 11일 감호소 내 지하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미확인
진정취지	◦ 변형만은 재판절차 없이 청주보안감호소에 수감 중, 1980년 7월 7일 부터 감호소내 모든 처우의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감호소측 간수 수명이 동원되어 감호과 1지하실에 강제로 가두어 놓고는 수갑을 채움과 동시에 포승줄로 뽕뽕 묶어 꼼짝못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집게로 입을 벌리고, 고무호스를 위에다 꽂은 채 진한 소금물을 부어넣는 과정에서 피를 토하고 절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55호 (최은순 사건)

의문사한 자	◦ 최은순(1963년 11월 17일생, 동국대 사범대 수학교육학과 2년 수료)
피진정기관	◦ 대한민국/국방부/기무사령부/육군본부/육군 제15사단/중부경찰서
사망일시	◦ 1983년 8월 14일 05:01경
사건개요	◦ 최은순은 1983년 8월 13일 20:00부터 같은달 14일 05:30까지 소속대 철책 51초소에서 상병 김두원과 복초 근무중, M-16 총기에 의한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최은순이, 분대장 김두원이 다른 초소에 점점 갔다 온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잔다는 이유로 김두원으로부터 45회 폭행과 가함을 받아, 이에 강력히 반발하여 총기를 들어 위협하였고, 이에 김두원이 위협을 직감하여 M 16 총기로 사망자를 현장에서 살해한 내용의 단순 총기살해 사건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최은순은 민주화투쟁시위 관계로 불법 연행되어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강제 징집되었고, 군 생활 중 사망사고가 나자 군 수사기관에서는 처음에는 가족에게 자살로 통보했다가 가족들이 현장에서 7일 동안 강력항의하자 단순 타살로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안부대 및 군 수사기관에서 학변자 최은순을 제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56호 (최석기 사건)

의문사한 자	◦ 최석기 (1931년 10월 24일생, 재소자)
피진정기관	◦ 대한민국/대전교도소장, 교무과장, 보안과장, 의무과장
사망일시	◦ 1974년 4월 4일
사건개요	◦ 유신 체제하에서 정치범으로 대전교도소 복역중 1974년 4월 4일 대전교도소 5사 독거방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심장마비로 사망.
진정취지	◦ 최석기는 1974년 4월 4일 정치범에 대한 인간이하의 대우 속에서 교도소측의 불법에 맞서 법적으로 보장된 처우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교도소측은 이를 폭압으로 묵살함과 동시에 각종 구실을 붙여 외진 독방에 가두어 넣고 폭력 누범 재소자를 동원해 고문 살해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57호 (박용서 사건)

의문사한 자	◦ 박용서 (1921년 7월 1일생, 재소자)
피진정기관	◦ 대한민국/대전교도소장, 보안과장, 교무과장
사망일시	◦ 1974년 7월 20일경
사건개요	◦ 유신 체제하에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대전교도소에 복역중 1974년 7월 20일경 대전교도소 5사 독거방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자살(목 부위 좌측 경동맥 자상)
진정취지	◦ 박용서는 1974년 정치범에 대한 인간이하의 대우 속에서 교도소측의 불법에 맞서 법적으로 보장된 처우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교도소측은 이를 폭압으로 묵살함과 동시에 각종구실을 붙여 외진 독방에 가두어 넣고 폭력누범 재소자를 동원해 고문 살해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함

□ 진정 제58호 (김용성 사건)

의문사한 자	◦ 김용성 (1916년 8월 20일생, 재소자)
피진정기관	◦ 대한민국/청주여자교도소(구 청주보호감호소)
사망일시	◦ 1980년 7월 11일
사건개요	◦ 청주감호소 복역 중 1980년 7월 7일 감호소측의 서적 제한 조치에 반대하는 단식농성 중 같은달 11일 지하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심장마비
진정취지	◦ 김용성은 재판절차도 없이 청주보안감호소에 수감 중, 1980년 7월 7일 부터 감호소 내 모든 처우의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감호소측 간수 수명이 동원되어 감호과 1지하실에 강제로 가두어 놓고는 수갑을 채움과 동시에 포승줄로 뽕뽕 묶어 꼼짝못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집게로 입을 벌리고, 고무호수를 위에다 꽂은 채 진한 소금물을 부어 넣는 과정에서 피를 토하고 절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59호 (안치용 사건)

의문사한 자	◦ 안치용(1963년 10월 17일생, 무직)
피진정기관	◦ 불특정
사망일시	◦ 1988년 5월 26일 행방불명
사건개요	◦ 안치용은 1982년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입학하여, 1985년 6월 29일 대우어패럴 사건으로 1년 복역한 후 1987년 9월경 4학년 2학기 복학하여 1988년 2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하였던 바, 1988년 5월 26일 아침 식사후 9:00경 평소와 같이 외출하였는데 그 이후로 행방불명됨.
수사결과	◦ 행방불명
진정취지	◦ 가족이 1988년 5월 31일 경찰에 행방불명 신고를 한 이후 기사게재, 광고 등의 방법으로 안치용을 찾으려 했으나 못 찾고 있으며, 현재까지 스스로 행방을 숨길 이유가 없는 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행방불명된 의혹이 제기되어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60호 (노진수 사건)

의문사한 자	◦ 노진수(1962년 3월 28일생, 학생)
피진정기관	◦ 대한민국
사망일시	◦ 1982년 4월 17일 행방불명
사건개요	◦ 노진수는 1981년 서울대 입학하여, 학년대표로 선출되어 학생운동을 하던 중, 1982년 4월 17일 행방불명됨.
수사결과	◦ 행방불명
진정취지	◦ 노진수는 행방불명되기 전 '형사들이 늘상 따라다니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주위에서 가만히 안 둔다'는 내용과 '신변에 있어서 신체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편지를 친구 김용범(경희대 한방과)에게 전한 사실이 있고, 1982년 4월 17일 2:30경 서울대학교 앞에 위치한 한림원 독서실에서 당시 독서실 직원이 '노진수가 기관원(안기부, 기무사, 보안대)으로 보이는 30대 초반의 2인의 사람에게 연행'된 사실을 목격한 이후 행방불명되는 등 행방불명 과정에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 개연성이 있기에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61호 (심오석 사건)

의문사한 자	◦ 심오석(1952년 3월 2일생,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생)
피진정기관	◦ 대한민국/경찰
사망일시	◦ 1976년 11월 14일 행방불명
사건개요	◦ 심오석은 1972년경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 1976년 11월 14일경 행방불명됨.
수사결과	◦ 행방불명
진정취지	◦ 1972년경부터 유신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1974년 12월경 경북대 의대생들의 유신반대 철야농성의 주동 및 배후조정혐의로 학교당국으로부터 무기정학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유신반대투쟁으로 경찰에 2회 연행되어 구금 및 고문을 당하였고, 1976년 11월 14일경 친구로부터 '피해야 되겠다'는 말을 듣고 삼랑진으로 피하였던 바, 심오석이 동대구역에서 건장한 남자 2명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것이 목격되는 등 행방불명 과정에 위법한 공권력 행사 개연성이 있어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62호 (정성희 사건)

의문사한 자	◦ 정성희(1962년 6월 14일생, 군인)
피진정기관	◦ 국방부/육군 제7895부대
사망일시	◦ 1982년 7월 23일 0:10경
사건개요	◦ 정성희는 1982년 7월 22일 소속대에서 대학생 전방입소자들과 근무투입 후, 익일 0:10경 근무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초소에 함께 근무한 대학생의 진술과 육군과학수사 연구소에 의뢰한 총기, 화약흔, 유서 등이 동일 품목으로 판명되어, 복무염증으로 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1981년 11월 25일 연세대 교내시위도중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받은 후 징집연령에 미달함에도 같은달 28일 강제 징집되었고, ◦ 군생활 도중 관심사병으로 분류되어 부대차원에서 특별 관리되었으며, ◦ 독실한 종교생활을 하였고 비굴하거나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소신을 가지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던 점을 보았을 때 자살할 이유가 없고, ◦ 사체처리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시신의 일부만을 보여주고, 화장을 강요하는 등 ◦ 사망과정에 의문이 있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63호 (김용권 사건)

의문사한 자	◦ 김용권(1964년 6월 10일생, 군인)
피진정기관	◦ 국방부/국군기무사령부/미 제2공병단 캠프인디언
사망일시	◦ 1987년 2월 20일
사건개요	◦ 김용권은 1987년 2월 18일 07:25 정신과 진료를 위해 용산에 있는 121병원으로 출발하여 진료를 받은 후 같은날 20:08경 부대 위병소 통해 복귀한 후, 같은달 20일 10:40경 소속대 내무반에서 목을 맨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불면증과 정신병증세를 비관하던 중 1987년 2월 15일부터 같은해 4월 30일 까지 소속대 병력이 팀스피리트 훈련에 참가하여 혼자 있는 것을 기회로, 목을 매어 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학생운동관련자들의 소재파악을 위해 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그로 인해 심리적 불안정이 초래되었고, ◦ 부대내의 소홀한 사병관리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으며, ◦ 유서도 없는 점에 비추어 ◦ 사망원인에 의문이 있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64호 (최우혁 사건)

의문사한 자	◦ 최우혁(1966년 3월 4일생, 군인)
피진정기관	◦ 대한민국/국방부/육군본부/국군기무사령부/제20사단
사망일시	◦ 1987년 9월 8일 00:50경
사건개요	◦ 최우혁은 1987년 4월 28일 입대하여 같은해 7월 2일 소속대 전입 정보과 서기병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달 9월 8일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상황실 근무를 마치고 내무반에 복귀한 후 야간작업을 한다며 내무반을 나가 같은달 9일 00:50경 불에 타고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함.
수사결과	◦ 평소 개인적 성격과 복무 부적응으로 자살하기로 마음 먹고 상황실 상황판을 지우기 위해 비치한 휘발유 약 0.9l를 전신에 뿌리고ライター로 불을 붙여 전신 2~3도의 화상을 입어 심폐기능 정지로 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휴학을 하면서까지 민주화운동에 열성이던 최우혁이 자살할만한 동기가 없고, ◦ 조잡하고 형식적인 군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65호 (박인순 사건)

의문사한 자	◦ 박인순(1960년 3월 2일생, 한신대 대학원생)
피진정기관	◦ 대한민국
사망일시	◦ 1988년 6월 21일 오후 사망 추정(국과수).
사건개요	◦ 박인순은 1988년 6월 23일 10:00경 한신대학교 기숙사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공식자료 없음.
진정취지	◦ 박인순은 1987년 건국대학교 영자신문 6월 20일자에 '정부의 헌법개정 태도 변화에 대한 반대-국민들은 민주적 헌법 개정을 원한다'를 기고한 후부터 집중적으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이어 1988년 5월에는 '6. 10. 남북 학생회담'준비에 한국신학대학원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경찰의 집중적인 추적을 받던 중에 의문의 죽음을 당했기에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66호 (심재환 사건)

의문사한 자	◦ 심재환(1962년생, 부평 삼화정밀 노동자)
피진정기관	◦ 불특정
사망일시	◦ 1987년 12월 15일
사건개요	◦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부평 삼화정밀에 입사하여 노동운동 중 1987년 12월 16일 대통령선거일에 자취방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수사 자료 없음
진정취지	◦ 육체적으로 매우 건강하고 의욕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해 왔고, 당시는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탄압이 강화된 시기였으며, 학생출신 노동운동가에 대한 미행, 협박, 불법연행 등이 만연된 상황이었으므로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되어 진상규명을 요구함.
결 정	◦ 민주화운동관련성은 인정되나,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진정을 기각함.

□ 진정 제67호 (김소진 사건)

의문사한 자	◦ 김소진(1966년 9월 27일생 군인 사망당시 이병)
피진정기관	◦ 육군/제25사단
사망일시	◦ 1987년 7월 30일경부터 1999년 9월 9일경까지 사이
사건개요	◦ 김소진은 1987년 7월 30일 소속대 유격훈련장에서 몸이 아프다고 하여 환자로 분류되어 숙영지에서 잔류하였다가 행방불명되어, 1999년 9월경 동 훈련장으로부터 1Km 이격된 지점에서 유골로 발견됨.
수사결과	◦ 수사자료 미확보
진정취지	◦ 탈영할 이유가 없고 유격훈련 복장으로 탈영하기는 곤란한 것이고, 유골이 발견된 장소가 당초 여러 번 수색을 했던 장소로 주변의 나무들이 잘려 있었으며, 헌병수사관이 당시 김소진이 환자가 아니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등 사망원인 및 과정에 의문이 있기에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68호 (이재근 사건)

의문사한 자	◦ 이재근(1958년 8월 10일생, 무직)
피진정기관	◦ 불특정
사망일시	◦ 1986년 7월 29일
사건개요	◦ 1986년 7월 29일 한강에서 의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수사자료 미확보
진정취지	◦ 성균관 대학교 재학 중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1980년 9월 10일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해 12월 20일 국군보안 교육대에 배속되어 신고식을 하면서 운동권 출신이라는 이유로 집단 구타당해 실신하여 1981년 10월 국군통합병원에 입원·수술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 경찰 및 보안대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아오면서 친구를 만난다고 나가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사망과정에 의문이 있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69호 (권두영 사건)

의문사한 자	◦ 권두영(1929년 9월 2일생, 한국광물주식회사 대표)
피진정기관	◦ 국가정보원(구 국가안전기획부)
사망일시	◦ 1993년 1월 14일
사건개요	◦ 1992년 8월 28일 안전기획부로 연행되어 같은해 9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1993년 1월 14일 아침 조회 직후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어, 안양병원에 후송 중 사망함.
수사결과	◦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자살했다는 현장을 확인해 보고 직접 현장재현을 해보았지만 도저히 노령의 권두영이 혼자서는 자살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사망원인에 의문이 있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70호 (정은복 사건)

의문사한 자	◦ 정은복(1936년 12월 17일생, 가정주부)
피진정기관	◦ 국가정보원(구 국가안전기획부)
사망일시	◦ 1983년 12월 15일 행방불명
사건개요	◦ 1983년 12월 15일 21:00경 급히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고 나간 후 행방불명됨.
수사결과	◦ 행방불명
진정취지	◦ 1983년 정은복(당시 48세)과 그의 친척이 안기부에 연행되어 한국전쟁 당시 정은복의 아버지가 월북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15일간 조사받은 사실이 있고, 안기부에서 풀려 나온 뒤에도 지속적으로 안기부에 보고서를 내며 관리를 받은 점에 비추어 행방불명 과정에 의문이 있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71호 (김제강 사건)

의문사한 자	◦ 김제강(1925년 9월 25일생, 이견산업·유신화학대표)
피진정기관	◦ 국가정보원(구 중앙정보부)
사망일시	◦ 1977년 11월 4일
사건개요	◦ 1977년 11월 4일 불시에 남산 중앙정보부에 소환 당해 같은날 19:00경 집에 들어온 직후 갑자기 사망함.
수사결과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사사실 없다고 회신
진정취지	◦ 60년대부터 이견산업 유신화학 사장으로 70년대 민주화를 하기 위해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을 지원했고. ◦ 박정희씨를 독재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자주 불려다니면서 심한 고문을 받았으며, ◦ 1977년 11월 4일 10:00경 "나 오늘도 남산 정보부에서 오라고 하니 다녀오겠다"며 나갔다가 같은날 19:00경 초췌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와 5분내 갑자기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사망하였는 바, ◦ 남산 정보부에서 심한 고문을 당해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결 정	◦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진정을 기각함.

□ 진정 제72호 (임태남 사건)

의문사한 자	◦ 임태남(1950년 10월 27일생, 운전자)
피진정기관	◦ 불특정
사망일시	◦ 1989년 11월 30일 07:40경
사건개요	◦ 1981년 4월 3일 광주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이후, 1989년 11월 30일 전남 광주 남구 백운동 이사집 센터 부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수사자료 미확보
진정취지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로 1989년 광주 남구 주월1동 파출소로 끌려가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구타당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혹이 제기되기에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73호 (박태조 사건)

의문사한 자	◦ 박태조(1948년 2월 14일생, 광업소 직원)
피진정기관	◦ 불특정
사망일시	◦ 1987년 11월 26일 04:00경
사건개요	◦ 박태조는 1987년 11월 26일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600 소재 주거지 방에서 잠을 자다가, 토혈한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수사자료 없음.
진정취지	◦ 박태조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가 내란 죄로 징역 4년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고, 계속적으로 연행, 구금 등을 당하다가 1987년 11월 26일 주거지 방에서 취침을 하던 중 토혈한 상태로 심장마비사로 처리된바, 그 죽음에 의문이 많아 이에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74호 (이수영 사건)

의문사한 자	◦ 이수영(생년월일 불상, 주프랑스 대사)
피진정기관	◦ 국가정보원(구 중앙정보부)
사망일시	◦ 1972년 4월 21일 06:00경
사건개요	◦ 주프랑스 대사관저에서 부엌칼에 찔린 채 발견되어 앰블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 중에 사망함.
수사결과	◦ 대사관측은 처음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하였으나 곧 가정불화로 인한 자살로 수정 발표. ◦ 프랑스 경찰은 자살이라고 수사결과 발표.
진정취지	◦ 1972년 4월경 중앙정보부가 제2의 동백림사건을 준비하고 있을 때 위 사건 조작을 반대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 귀국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국내활동을 저지할 목적으로 파견된 중앙정보부 직원이 살해했다는 의문이 제기되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결 정	◦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진정을 기각함.

□ 진정 제75호 (이승룡 사건)

의문사한 자	◦ 이승룡(1953년 2월 2일생, 경북대 공업교육과 3년)
피진정기관	◦ 대한민국
사망일시	◦ 1978년 6월 10일
사건개요	◦ 1978년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때로부터 4개월 후인 같은해 6월 10일 경북대학교 교내 숲 속에서 혁대로 목을 맨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복학도 안되고 가정 형편도 어렵고, 앞날도 불투명하여 현실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1975년 4월 경북대 재학 중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제적, 강제 징집된 사실이 있고, 자살할 이유와 징후가 없었고, 사체에 멍 자국이 있고, 목에 삭흔이 없고, 사체가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누워져 있었으며, 이후 경찰의 수사과정에 의혹이 많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76호 (김석조 사건)

의문사한 자	◦ 김석조 (1944년 4월 22일생, 경북대학교 조교)
피진정기관	◦ 국가정보원(구 중앙정보부)
사망일시	◦ 1971년 11월 11일 (추정)
사건개요	◦ 경북대학교 조교로 근무하던 중, 1971년 11월 12일 대구 광역시 동구 봉무동 소재 속칭 소랑골 뒷산 중턱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사체 발견 현장에 청산가리 등이 놓여 있는 점에 비추어 자살로 수사종결.
진정취지	◦ 자살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더구나 유서 한 장이 없는 자살이란 납득이 가지 않고, 사체의 왼손 손가락 4개가 톱과 같은 물체에 의하여 심하게 긁혀 있었으며, 사망 1개월 전쯤 가족잡마 차림의 건장한 남자 3인과 외출 후 돌아와서부터 불안·초조해 하며 여동생에게 중앙정보부의 협박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한 사실이 있는 등 사망원인에 의문이 있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결 정	◦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진정을 기각함.

□ 진정 제77호 (정종인 사건) - 각하

의문사한 자	◦ 정종인( 1965년 2월 3일생, 진주 경상대학교 1학년 재학)
피진정기관	◦ 경남 고성경찰서
사망일시	◦ 1985년 1월 16일
사건개요	◦ 진주 경상대 축산과 재학 중 겨울방학 때인 1985년 1월 16일 고성군청 소속 산불감시원으로 아르바이트 하다가, 경남 고성군 영오면 신흥부락 소재 신흥교 뚝 밑 아래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수사결과	◦ 정종인이 음주만취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장소인 신흥교 약 3. 1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두정부 뇌경막 하출혈 및 동사로 사고사한 것으로 내사 종결.
진정취지	◦ 가족의 참여없이 부검이 이루어졌고, 부검담당 의사가 '상상외로 상처가 많다. 유족에게 지금은 그 말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고성경찰서에서 사건을 축소, 은폐한 의혹이 있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78호 (김진홍 사건)

의문사한 자	◦ 김진홍(1955년 11월 14일생, 무직)
피진정기관	◦ 국방부/보안사령부/경찰청
사망일시	◦ 1990년 7월 14일
사건개요	◦ 김진홍은 1980년 군 입대하여 복무한 후 전역한 뒤, 1990년 7월 14일 19:30경 경기도 남양주군 진건면 진관리 653의 3 소재 주거지에서 변사체로 발견.
수사결과	◦ 수사자료 미확보
진정취지	◦ 군 복무 당시, 전 병력이 모여 있을 때 군사독재 원흉 전두환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쳐 보안사로 끌려가 고문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유증으로 통합병원에서 치료받다 제대하였으나, 후유증 증세가 심각히 나타나 요양차 남양주로 피신했으나 경찰로부터 지속적인 감시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 사망원인에 의문이 있으므로 진상 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79호 (박동학 사건)

의문사한 자	◦ 박동학(1973년 3월 21일생, 대학생)
피진정기관	◦ 대구 달서경찰서/대구공업대학(구 대구공업전문대학)
사망일시	◦ 1996년 5월 8일 17:06경
사건개요	◦ 대구 공업전문대 재학 중이던 1996년 5월 6일 학생자치권 보장에 대한 협상이 학교측과 결렬되자 휘발유를 사들고 같은날 16:20경 학생과로 가서 학장, 학생과장 면담을 요청하러 갔다가, 발화사고가 일어나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이던 같은달 8. 사망함.
수사결과	◦ 학생과장 김갑준이 살인 및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무혐의 불기소처분됨.
진정취지	◦ 박동학이 생존 기간에 부친과 동료, 후배, MBC기자 앞에서 불은 자신이 붙인 것이 아니라 학생과장이 불을 붙였다고 말을 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되는 등 사망원인에 의문이 있기에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진정 제80호 (최봉대 사건)

의문사한 자	◦ 최봉대(1950년 3월 22일생, 운수업)
피진정기관	◦ 경찰청
사망일시	◦ 1982년 2월 9일 16:00경
사건개요	◦ 최봉대는 1982년 2월 8일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울포리 소재 주소지에서 통닭을 사러 나간 후 행방불명 되었는데 최봉대의 동생 최봉일은 같은 달 10일 경찰의 연락을 받고 수원소재 신경외과 병원으로 찾아 간 바, 의사로부터 최봉대가 1982년 2월 9일 16:00경 사망한 사실을 전해들어 알게 됨.
수사결과	◦ 수사자료 미확보
진정취지	◦ 최봉일은 1982년 2월 9일 연락을 받고 파출소에 찾아 갔을 때에는 경찰이 최봉대의 학생운동 경력등에 관해서만 질문하였고 최봉대의 소재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다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0일에서야 변사한 사실을 알려 주었으며, 경찰측에서 1982년 2월 8일 당시에 최봉대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족에게 연락을 지연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사망과정에 의문이 있으므로 진상규명을 요구함.

□ 직권 제81호 (박영두 사건)

의문사한 자	◦ 박영두(1955년 7월 28일생, 재소자)
관련기관	◦ 청송교도소
사망일시	◦ 1984년 10월 14일 03:00경
사건개요	◦ 박영두는 삼척교육대에서 청송교도소로 이입된 군 간호사로 특수 사동인 7동에 수감 중이던 1984년 10월 14일 7사하에서 사망
수사결과	◦ 심장마비
직권조사개시 이유	◦ 박영두는 1979년 10월 부마소요 당시 마산에서 시위에 참가한 전력이 있으며, ◦ "군 보안대에서 맞아 억울하다. 감호법 철폐하라"고 주장하다 1984년 10월 13일 14:05 - 17:00까지 8사하 지하실에서 물고문, 비녀꽃기 등의 고문과 무수한 구타를 당하여 사망하였음에도 심장마비사로 처리한 의혹이 있음.
결 정	◦ 박영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망 박영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의 심의를 요청함(반대의견; 망 박영두가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음은 인정되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망에는 이의제기).

□ 직권 제82호 (탁은주 사건)

의문사한 자	◦ 탁은주(1972년 4월 20일생, 학생)
관련기관	◦ 불특정
사망일	◦ 1991년 12월 10일 행방불명
사건개요	◦ 탁은주는 1990년 3월 창원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하던중, 1991년 12월 10일경 학교에 등교 후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과 전교조 합법성 쟁취 등 관련 행사에 참가후 행방불명.
수사결과	◦ 행방불명
직권조사개시 이유	◦ 탁은주는 1990년 3월 창원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하여 각종 민주화운동 집회·시위에 참가하였으며 ◦ 1991년 12월10일경 행방불명 후 경찰서에 행방불명 신고를 한 후 학교 동료, 교수, 사회지인, 신문사 등을 통해 향방을 찾았으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직권 제83호 (이재문 사건)

의문사한 자	◦ 이재문(1934년 경북 의성 출신, 기자)
관련기관	◦ 구 중앙정보부, 교도소
사망일	◦ 1981년 11월 22일 옥중 사망
사건개요	◦ 이재문은 1979년 10월 4일 남조선 민족해방전선(남민전) 준비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1980년 12월 23일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서대문구치소에서 형 집행 대기중 옥중 사망.
수사결과	◦ 미확인
직권조사개시 이유	◦ 검거당시 당한 고문의 후유증과 교도소 내의 가혹행위 또는 비인도적인 진료거부 행위 등으로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있음.



□ 직권 제84호 (장석구 사건)

의문사한 자	◦ 장석구(1927년 9월 19일생, 기자)
관련기관	◦ 구 중앙정보부, 교도소
사망일	◦ 1975년 10월 15일
사건개요	◦ 장석구는 1974년 6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수배되어 도피중인 이성재(그 후 무기징역형 선고받음)를 자신의 공장에 숨겨준 혐의로 구속되어, 도피방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사망
수사결과	◦ 뇌일혈로 옥중 사망
직권조사개시 이유	◦ 장석구의 처 고○○은 장석구가 자신이 고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사망할 당시 거의 식물인간이 다 된 상태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 당시 수사과정에서 자행된 인권유린의 실태를 규명할 필요가 있어 직권조사함이 상당함.

□ 직권 제85호 (전정배 사건)

의문사한 자	◦ 전정배(1952년 4월 20일생, 전남 고흥 출신)
관련기관	◦ 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방부
사망일	◦ 1981년 6월 20일
사건개요	◦ 전정배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회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수립된 삼첨계획5호(불량배소탕 및 순화계획)에 의거, 1980년 8월 4일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른 삼첨교육 대상자로 순화교육을 받던 중, 1981년 6월 20일 육군 제5사단 36연대에서 발생한 감호생 집단난동사건 과정에서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 중 관통총창실혈로 사망.
수사결과	◦ 당시 지휘관인 중령 윤○○은 불구속입건 소령 고○○, 대위 김○○, 중위 한○○은 구속되었다가 기소유예 처분 ◦ 감호생 14명은 초병집단협박 초소침범 군용시설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군법회의에 회부 이 중 7명은 실형 선고, 3명은 집행유예
직권조사개시 이유	◦ 5공화국 출범 초기에 삼첨교육의 입안, 시행과정에서 자행된 인권유린의 실태를 규명할 필요가 있어 직권조사함이 상당함.

## IV. 식 인

□ 진정 제 1호 (양상석 사건) .....	13	□ 진정 제44호 (노철승 사건) .....	56
□ 진정 제 2호 (임용준 사건) .....	14	□ 진정 제45호 (이승삼 사건) .....	57
□ 진정 제 3호 (신호수 사건) .....	15	□ 진정 제46호 (박성은 사건) .....	58
□ 진정 제 4호 (이이동 사건) .....	16	□ 진정 제47호 (임기운 사건) .....	59
□ 진정 제 5호 (김두황 사건) .....	17	□ 진정 제48호 (정인택 사건) .....	60
□ 진정 제 6호 (정경식 사건) .....	18	□ 진정 제49호 (한영현 사건) .....	61
□ 진정 제 7호 (최종길 사건) .....	19	□ 진정 제50호 (김영환 사건) .....	62
□ 진정 제 8호 (신영수 사건) .....	20	□ 진정 제51호 (정도준 사건) .....	63
□ 진정 제 9호 (김창수 사건) .....	21	□ 진정 제52호 (손운규 사건) .....	64
□ 진정 제10호 (이창돈 사건) .....	22	□ 진정 제53호 (한희철 사건) .....	65
□ 진정 제11호 (우수열 사건) .....	23	□ 진정 제54호 (변형만 사건) .....	66
□ 진정 제12호 (이진래 사건) .....	24	□ 진정 제55호 (최은순 사건) .....	67
□ 진정 제13호 (장종훈 사건) .....	25	□ 진정 제56호 (최석기 사건) .....	68
□ 진정 제14호 (장준하 사건) .....	26	□ 진정 제57호 (박용서 사건) .....	69
□ 진정 제15호 (박현강 사건) .....	27	□ 진정 제58호 (김용성 사건) .....	70
□ 진정 제16호 (황선철 사건) .....	28	□ 진정 제59호 (안치용 사건) .....	71
□ 진정 제17호 (송종호 사건) .....	29	□ 진정 제60호 (노진수 사건) .....	72
□ 진정 제18호 (박태순 사건) .....	30	□ 진정 제61호 (심오석 사건) .....	73
□ 진정 제19호 (이철규 사건) .....	31	□ 진정 제62호 (정성희 사건) .....	74
□ 진정 제20호 (이내창 사건) .....	32	□ 진정 제63호 (김용권 사건) .....	75
□ 진정 제21호 (박창수 사건) .....	33	□ 진정 제64호 (최우혁 사건) .....	76
□ 진정 제22호 (김준배 사건) .....	34	□ 진정 제65호 (박인순 사건) .....	77
□ 진정 제23호 (이덕인 사건) .....	35	□ 진정 제66호 (심재환 사건) .....	78
□ 진정 제24호 (우종원 사건) .....	36	□ 진정 제67호 (김소진 사건) .....	79
□ 진정 제25호 (김성수 사건) .....	37	□ 진정 제68호 (이재근 사건) .....	80
□ 진정 제26호 (문용섭 사건) .....	38	□ 진정 제69호 (권두영 사건) .....	81
□ 진정 제27호 (문승필 사건) .....	39	□ 진정 제70호 (정은복 사건) .....	82
□ 진정 제28호 (정법영 사건) .....	40	□ 진정 제71호 (김제강 사건) .....	83
□ 진정 제29호 (김상원 사건) .....	41	□ 진정 제72호 (임태남 사건) .....	84
□ 진정 제30호 (이재호 사건) .....	42	□ 진정 제73호 (박태조 사건) .....	85
□ 진정 제31호 (고정희 사건) .....	43	□ 진정 제74호 (이수영 사건) .....	86
□ 진정 제32호 (허원근 사건) .....	44	□ 진정 제75호 (이승룡 사건) .....	87
□ 진정 제33호 (문영수 사건) .....	45	□ 진정 제76호 (김석조 사건) .....	88
□ 진정 제34호 (오범근 사건) .....	46	□ 진정 제77호 (정종인 사건) .....	89
□ 진정 제35호 (배중손 사건) .....	47	□ 진정 제78호 (김진홍 사건) .....	90
□ 진정 제36호 (김용갑 사건) .....	48	□ 진정 제79호 (박동학 사건) .....	91
□ 진정 제37호 (박종근 사건) .....	49	□ 진정 제80호 (최봉대 사건) .....	92
□ 진정 제38호 (우인수 사건) .....	50	□ 직권 제81호 (박영두 사건) .....	93
□ 진정 제39호 (이운성 사건) .....	51	□ 직권 제82호 (탁은주 사건) .....	94
□ 진정 제40호 (박필호 사건) .....	52	□ 직권 제83호 (이재문 사건) .....	95
□ 진정 제41호 (정연관 사건) .....	53	□ 직권 제84호 (장석구 사건) .....	96
□ 진정 제42호 (남현진 사건) .....	54	□ 직권 제85호 (전정배 사건) .....	97
□ 진정 제43호 (박상구 사건) .....	55		